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을 위한 법제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3-16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법제연구

김 정 순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법제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Giving Back Private Wealth
to Society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3.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나 국가의 재정지출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산의 사회환원 실천을 토대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국가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임. 따라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의 촉진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는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 극복, 기회의 평등 이외에 결과의 평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요청 증가, 지도층의 자발적 노력 확대 요구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이 보고서는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현황
 -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현황, 개인기부금 현황, 기부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현황,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현황 파악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
 - 기존 단체·법인 등에서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환원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법률 중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한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의 자선 등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재산 출연이라는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법제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현황 고찰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은 「신탁법」상의 일반규정과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으로서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손금산입, 이월공제, 증여세나 상속세 면제 등의 조세관계법 현황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세제지원 제도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 개선방안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의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단체·법인 등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기부금품모집대상사업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등

- 공익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
 - 공익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개선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 공익성 판단 등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도입 검토
- 재산의 사회환원에 관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개선
 -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III. 기대효과

-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수립에 기여
- 현행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입법화의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재산의 사회환원, 기부, 증여, 출연, 기부금품, 소득공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신탁, 기부연금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oday, most of countries expand the budge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quality of life, which is one of their ultimate purposes, but expanding such budget would not be enough to achieve that purpose.
- Since the government has played a limited role in improving the people's quality of life, the efforts to solve social problems by giving back one's own wealth to society have risen from each section of the society.
- The cultural practices of giving back to society have been observ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a country. It is an indicator of a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In the shift to a matured society, promoting the donation of one's own wealth to community is our mission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 A bond of sympathy to support the donation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has developed between members of the groups. The more social conflicts occur, the bigger demands for wealthy individuals' donations grow. Thus, improving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donation of wealth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growing social

needs, such as problems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wealth, demands for the car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cluding the provision of equality of outcome as well as equality of opportunity, inviting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leading peoples in the society.

-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for improving laws regarding the donation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so as to solve social conflicts caused by soci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wealth among people and establish a fair society by suggesting reasonable methods for promoting returning private wealth to society.

II. Major Contents

- Current status of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Overview on the importance of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Current status of social surveys on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Social surveys on returning private wealth to society
 - Survey on giving back personal wealth to society
 - Survey on giving back the property of juristic entities to society

-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in giving back private wealth to society
 - Current status of the World Giving Index, present conditions of personal donation, the number of juristic entities and amounts donated from those entities, report on major donating entities and their activities
- Overview on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the donations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Overview on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donations of personal wealth to existing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Where the donations of private wealth are given to existing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for public interests, overview of provisions under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the general law concerning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which prescribes the matters concerning the Community Chest of Korea
 -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the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by establishing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Civil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Assistance for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with regard to laws regarding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in such a manner that donors establish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y contributing their own property

- Current status of laws regarding returning private wealth to society by trusting one's own property to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Consideration on the general provisions and provisions on public trusts provided for in the Trust Act
- Overview of current status of taxation laws in terms of the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Consideration of taxation laws, focusing the provisions on income deduction and exemption,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deduction carried forward, exemption of gift or inheritance tax, etc., in relation to donations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Tax support system in relation to donations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the promotion of returning private wealth to society
 - Analysis of issues founded the study on the laws regarding the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and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m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donations of private wealth to existing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relation with the collection of donations and extension of the scope of projects to solicit donations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the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by establishing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permission for establish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returning private wealth to society by trusting one's own property to organizations, corporations, etc.
- Improvement of public trust system, including the consideration of criteria for public interests and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gift annuity
-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axation laws in terms of the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 Extension of the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s for donations and increase of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earned income tax credit

III. Expected Effects

- Contribution to formulate legislative policies to solve social conflicts caused by social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wealth among people and establish a fair society by suggesting reasonable methods to promote giving back personal wealth to society

- Suggestion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the return of personal wealth to society based on the analyzation and comparison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use of the suggestions as source materials for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 **Key Words :** Giving back of private wealth to society, returning of personal wealth to society, donation, endowment, contribution, tax deduction,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ublic trust, gift annuity

목 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21
제 2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23
제 1 절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23
제 2 절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24
1.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25
2.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38
제 3 절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46
1.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46
2. 개인기부 규모	48
3. 기부 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규모	51
4.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규모	53
제 3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55
제 1 절 개 관	55
제 2 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59

1. 개 관	59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0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1
제 3 절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78
1. 개 관	78
2. 민 법	78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81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90
5. 소 결	94
제 4 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95
1. 개 관	95
2. 「신탁법」의 일반규정	96
3. 「신탁법」의 공익신탁 규정	100
4. 소 결	101
제 5 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102
1. 조세특례제한법	102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10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3
4. 외국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세법 현황	116
제 6 절 소 결	126
제 4 장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제 1 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29

1. 개 관	129
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개선	131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132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사업범위의 개선	136
5. 기부금품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의 개선	138
6.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142
7.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도입 검토	147
8. 모범기부자 등에 대한 예우	148
제 2 절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50
1. 개 관	150
2. 개선방안	151
제 3 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계법제 개선방안	152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방안	152
2. 기부연금의 도입	157
제 4 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의 개선방안	159
1.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159
2. 소득세의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160
참 고 문 헌	1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지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빈곤, 소득 양극화,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전 국가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의 하나가 민간영역에서 재산의 사회환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나눔, 재산의 기부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국가는 시민참여의 국가이고, 이는 시민참여가 국가 및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하므로,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에게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중 특히 자산가나 사회지도층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갖게 하고 이들이 앞장서서 재산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재정위기로 복지국가가 쇠퇴하고 정부역할의 축소가 전개되면서 시민사회가 재산이 사회환원이라는 자발적 나눔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산의 사회환원 실천을 토대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간참여의 확대로 나타난다.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국가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제대로 된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성숙한 경제·사회환경을 기반으로 제대로 자리

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한 사회 또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의 촉진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 극복, 기회의 평등 이외에 결과의 평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요청 증가, 지도층의 자발적 노력 확대 요구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계층간 갈등이 증폭될수록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사회환원 실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재산환원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환원 재산의 모금기관 등 기존 기부금관련 단체, 재산의 사회환원 제도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다양한 형태의 공익법인 제도, 공익신탁제도의 확충, 사회환원 재산의 운영 합리화·투명화 및 경영공시,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고, 탈법적·형식적 사회환원을 지양하도록 하여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하는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

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의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우선,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미를 고찰한다.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일상생활에서의 추상적인 문구의 의의를 법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재산의 사회환원’과 가장 근접한 법적 용어는 ‘기증’, ‘유증’, ‘기부금’, ‘기부금품’, ‘공익신탁’, ‘재산 출연’, ‘나눔’ 등으로 파악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은 앞선 기술한 ‘기부금’ 등의 용어와 동의어 내지는 대체어, 또는 합집합적 의미를 갖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 ‘재산의 사회환원’은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시민과 법인의 인식과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발표된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끝으로,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이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개인기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기부 법인 수 및 법인 기부금의 현황은 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모금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비영리·공익 단체나 법인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재산환원하는 방식, 둘째로 재산의 출연행위를 통하여 자선 등의 공익사업을 할 새로운 비영리·공익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로 공익목적의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의 유형별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의 조세관계법령의 내용도 개관해 본다. 나아가 외국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조세지원 법제 현황도 살펴본다. 미국과 독일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현황을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기부금품모집 대상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등 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비영리·공익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공익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개선 등이 검토된다.

그리고, 공익목적의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익성 판단 등과 관련한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도입 검토 등이다.

끝으로,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이 검토된다.

제 2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제 1 절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베푸는 행위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은 기존의 단체나 법인에 기부하거나, 새로운 공익단체나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거나, 공익신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재산의 사회환원은 ‘재산기부’로 통용된다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연(금)’, ‘증여’, ‘유증’, ‘기부금’, ‘기부금품’, ‘나눔’ 등의 용어가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으로서의 ‘증여’와 관련하여 「민법」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나눔’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최초로 사용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¹⁾이다. 이법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제1호)이 포함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제2항), 여기서 ‘나눔’이라는 용어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사회환원은 ‘나눔’중에서 ‘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법률 제11238호, 2012.1.26, 전부개정(시행 2013.1.27)

재산의 사회환원으로서의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호).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경우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금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자세히 되어 있다. 한 예로서 「법인세법」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파악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따라서 재산의 사회환원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이전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나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 등 행정기관 뿐 아니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 민간기관에서도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 활동 즉 기부활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사회의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각종 사회조사나 실태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 자체의 차이, 표본수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직접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조사방식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 사회조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현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개인의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실시된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12(Giving Korea 2012) 조사결과를 통해 재산의 사회환원 활동인 기부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1) 기부경험

<표1>기부경험과 형태에 따르면, 1년간(2010.7.15~2011.7.14)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6.4%이며, 기부경험자의 기부형태응답을 보면 현금기부형태가 34.8%, 물품기부가 8.5%를 차지

2) 통계청은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자원봉사에 대하여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2011.7.15.~7.29.(15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나눔문화)」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중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활동인 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사회조사에서는 ‘기부’를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기부’에는 ① 보육원, 개인 등 대상자 직접 후원, ARS 등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 월드비전 등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기부의 정의에 부합된 바자회, 일일찾집티켓 구입 등, ② 구세군, 길거리 적선,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③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구제현금, 학교발전기금, 적십자회비 등이 포함되나, ① 친구·친척·직장동료 등에 대한 경조사비, 각종 회비, ② 종교단체 운영목적의 현금, 십일조, 보시, 시주 및 성당신축 후원, 교회건축현금, 사찰건축현금 등, 헌혈, 장기기부 등 생명나눔, 촌지, ③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정치후원금,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 기부, ④ 대형마트에서 제품 구입후 영수증을 함에 넣은 경우는 제외하고 조사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11.24.), 1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3/index.board?bmode=read&bSeq=219&aSeq=252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하고 있다.

지역별 기부경험 응답을 보면 도시(동부)지역이 37.4%, 농어촌(읍면부)지역이 31.8%이다. 그리고 성별 기부경험을 보면 남자는 38.4%. 여자는 34.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기부경험은 40대가 45.7%로 가장 비율이 높고, 가장 비율이 낮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24.0%로 나타났다.

<표 1> 기부경험과 형태(복수응답)³⁾

(단위 : %)

구 분		기부 경험		기부 형태	
		없음	있음	현금기부	물품기부
계		63.6	36.4	34.8	8.5
지역 별	도 시 (동 부)	62.6	37.4	35.8	8.9
	농어촌 (읍면부)	68.2	31.8	30.2	6.9
성 별	남 자	61.3	38.7	37.4	7.0
	여 자	65.8	34.2	32.1	10.0
연 령 별	13 ~ 19세	58.9	41.1	39.6	4.0
	20 ~ 29세	74.5	25.5	23.7	5.2
	30 ~ 39세	59.8	40.2	38.3	10.2
	40 ~ 49세	54.3	45.7	43.9	12.6
	50 ~ 59세	58.9	41.1	39.5	10.8
	60세 이상	76.0	24.0	23.0	5.8

3)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11.24.)(이하 “2011년 사회조사“라 한다.)” 4쪽 표 재인용

2) 현금기부

<표 2> 현금기부자(복수응답)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기부를 경험한 자로서 현금기부자는 34.8%이며, 기부경험자의 기부경로를 보면 ‘모금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39.7%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단체’에 대한 현금기부가 29.5%, ‘종교단체’에 대한 현금기부가 23.2%, ‘기업(직장)’에서의 현금기부가 16.8%,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1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현금기부자(복수응답)4)

(단위 : %)

구 분	현금 기부자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2009년	32.3	15.9	29.5	39.7	23.2	16.8	2.9
2011년	34.8	12.1	21.8	46.9	21.1	13.8	8.1

<표 3> 현금기부금액(복수응답)에 따르면,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16만7천원이다. 기부경로별 평균 기부금액을 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35만 5천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23만 9천원, ‘기업(직장)’에서의 기부금이 13만 3천원,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9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3> 현금기부금액(복수응답)5)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평균 기부금액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계	167	355	33	96	239	133	38

4) 2011년 조사는 대상이 13세 이상 인구이지만 2009년 조사는 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6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표 4> 현금기부횟수(복수응답)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중 기부경험자로서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6.1회로 나타났으며, 기부경로별 기부횟수를 보면 ‘대상자에게 직접’이 6.5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종교단체’와 ‘기업(직장)’이 각각 5.7회이며, 그 다음으로 ‘모금단체’가 4.4회, ‘언론단체’가 4.1회로 조사되었다.

<표 4> 현금기부횟수(복수응답)⁶⁾

(단위 : 회)

구 분	현금기부자 평균 기부횟수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2009년	5.6	5.1	3.2	4.0	5.6	4.4	6.1
2011년	6.1	6.5	4.1	4.4	5.7	5.7	3.8

3) 물품기부

<표 5> 물품기부자(복수응답)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기부경험자로서 물품을 기부한 자는 8.5%이며, 물품기부의 경로를 보면 ‘종교단체’를 이용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상자에게 직접’이 30.3%이며, ‘물품후원단체’가 23.9%를 차지하고 있다.

<표5> 물품기부자(복수응답)⁷⁾

(단위 : %)

구 분	물품 기부자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물품 후원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계	8.5	30.3	4.5	23.9	35.6	12.8	4.1

5) 앞글, 8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6) 2011년 조사는 대상이 13세 이상 인구이지만 2009년 조사는 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앞글, 7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표 6> 물품기부횟수(복수응답)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중 기부경험자로서 물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3.4회로 나타났다. 물품기부의 경로를 보면, ‘대상자에게 직접’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평균 3.6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종교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평균 3.2회, ‘언론기관’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평균 3.1회, ‘물품후원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평균 2.8회로 나타났다.

<표 6> 물품기부횟수(복수응답)⁸⁾

(단위 : 회)

구 분	물품기부자 평균 기부횟수	기부 경로					
		대상자에게 직접	언론기관	물품 후원단체	종교단체	기업(직장)	기타
계	3.4	3.6	3.1	2.8	3.2	2.5	1.8

4) 기부 이유

<표 7> 기부하는 이유에 따르면, 기부경험자가 기부하는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가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가 28.3%, ‘개인적 신념때문에’가 14.9%, ‘종교적 신념때문에’가 7.9%로 나타났다.

<표 7> 기부하는 이유⁹⁾

(단위 : %)

구 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개인적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세제혜택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서	기타
계	43.3	28.3	14.9	7.9	1.3	3.9	0.4

7) 앞글, 10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8) 앞글, 11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표 8> 기부하지 않은 이유에 따르면, 기부한 경험이 없는 자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2.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18.6%,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8.9%,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가 5.7%로 나타났다.

<표 8> 기부하지 않은 이유¹⁰⁾

(단위 : %)

구 분		기부 경험 없음	기부하지 않은 이유					기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 방법을 몰라서	기부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직접적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계		63.6	62.6	18.6	3.7	8.9	5.7	0.5
지역별	도 시(동 부)	62.6	61.8	18.8	3.7	9.4	5.9	0.5
	농어촌(읍면부)	68.2	66.1	18.2	3.4	6.6	5.2	0.5
성별	남 자	61.3	62.1	19.9	3.5	9.0	5.1	0.4
	여 자	65.8	63.0	17.5	3.9	8.7	6.3	0.6
연령별	13~19세	58.9	43.0	24.9	11.9	5.9	13.4	0.7
	20~29세	74.5	58.0	21.1	3.8	9.9	6.7	0.5
	30~39세	59.8	56.8	20.4	2.7	14.6	5.2	0.4
	40~49세	54.3	63.6	16.6	2.5	11.3	5.2	0.7
	50~59세	58.9	67.3	17.5	2.4	7.6	4.8	0.5
	60세 이상	76.0	75.8	14.7	2.4	3.9	3.0	0.3

9) 앞글, 13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10) 앞글, 13쪽 표 재인용

5) 기부희망 분야

<표 9>에 따르면, 기부금이 사용되기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의료분야’가 32.1%, ‘해외구호활동분야’가 24.5%, ‘지역사회발전분야’가 20.4%로 나타났다.

<표 9> 기부희망분야(복수응답)¹¹⁾

(단위 : %)

구 분	사회복지 분야	의료분야	해외구호 활동분야	지역사회 발전분야	공익활동 분야	교육 및 연구활동 분야	문화 및 예술분야	기타
계	82.2	32.1	24.5	20.4	11.0	12.8	3.6	0.3

<표 10> 기부대상 인지경로에 따르면, 기부경험자의 기부대상 인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경우가 29.4%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직장/학교’를 통한 인지가 24.5%, ‘종교단체’를 통한 인지가 19.8%,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가 14.6%,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가 8.6%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기부대상 인지경로¹²⁾

(단위 : %)

구 분	언론매체	종교단체	직장/학교	시설/단체의 직접 홍보	가족/친구 및 동료의 권유	인터넷	기타
계	29.4	19.8	24.5	14.6	8.6	2.2	0.8

6) 향후 기부의향 및 유산 기부의향

<표 11> 향후 기부의향 및 유산 기부의향에 따르면, 향후 계속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45.8%가 기부의향이 있다

11) 앞글, 14쪽 표 일부발췌 및 재인용

12) 앞글, 15쪽 표 일부발췌 및 재인용

고 응답했으며, 54.2%가 기부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산기부과 관련하여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37.3%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2.7%는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78.8%가 유산을 기부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응답자 평균치보다 16.1% 높게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향후 기부의향 및 유산 기부의향¹³⁾

(단위 : %)

구 분		향후 기부의향		유산 기부의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		45.8	54.2	37.3	62.7
지역 별	도 시(동 부)	47.5	52.5	39.1	60.9
	농어촌(읍면부)	38.2	61.8	29.2	70.8
성 별	남 자	45.2	54.8	38.2	61.8
	여 자	46.4	53.6	36.5	63.5
연 령 별	13 ~ 19세	49.2	50.8	49.2	50.8
	20 ~ 29세	47.7	52.3	41.3	58.7
	30 ~ 39세	52.6	47.4	39.4	60.6
	40 ~ 49세	54.3	45.7	42.6	57.4
	50 ~ 59세	46.2	53.8	35.0	65.0
	60세 이상	26.0	74.0	21.2	78.8

13) 앞글, 16쪽 표 재인용

7)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

<표 12>에 따르면,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에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증대’가 54.8%로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첫 번째로 필요한 항목으로 선택되었다. 이어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가 20.6%, 나눔교육/대중캠페인 등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이 1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기부문화 확산 방안¹⁴⁾

(단위 : %)

구분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	나눔교육/대중캠페인 등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	소득공제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	기부방법의 편리성 증대	경조금 기부/유산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법홍보	기타
계	54.8	16.1	20.6	4.9	2.0	1.1	0.6

(2) 기빙코리아 2012¹⁵⁾ 조사

기빙코리아 2012 조사에서는 현금 및 보시를 제외한 기부를 ‘순수 기부’라 하고 경조사비와 종교적 현금 및 보시를 모두 포함한 기부를

14) 앞글, 17쪽 표 일부발췌 재인용

15)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에서의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그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를 개최하고 있다. 기빙코리아는 꺾년으로 개인기부문화와 기업사회공헌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 10월 개최된 제1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2”에서 한국인의 기부문화 지수인 “Giving Index 2011(2011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가 조사·발표되었다(노연희, 한국인의 나눔: Giving Index 2011. 이하 “기빙코리아 2012”라 한다.). 기빙코리아 2012는 2011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12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기부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물이다. <http://www.beautifulfund.org/?c=3/14/85&uid=25597>(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참조.

‘포괄기부’라 하여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순수기부 참여율은 57.5%, 포괄기부 참여율은 91.2%로 나타났다.¹⁶⁾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단체에의 기부’가 가장 높은 72.2%를 차지하였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21.6%),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9.6%),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6.4%)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는 ‘경조사비’라는 응답이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 기부처¹⁷⁾

(단위 : %)

구 분	순수기부처(N=591)	포괄적 기부처(N=939)
자선단체	72.2	12.3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1.6	45.4
부랑인	19.6	0.8
해외 구호	16.4	13.6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7.3	2.6
친척, 친구, 이웃	6.1	2.0
정치단체	4.3	0.3
교육기관	4.1	10.3
시민단체	3.2	2.7
의료기관	1.3	3.9
기타	0.8	0.5
문화예술단체	0.5	4.6
경조사비	-	91.3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	-	41.8

16)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12, 21쪽 그림 III-1 참조.

17) 앞글, 22쪽 그림 III-2 재구성.

<표 14>에 의하면 순수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기부 참여율은 31.7%, 빈도는 ‘매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7%로 높고, ‘매분기’(10.5%), ‘매주’(1.0%)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기부 참여 비율은 2007년 16.6%, 2009년 24.4%, 2011년 3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4> 정기적 기부 참여 추이¹⁸⁾

(단위 : %)

구 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정기적 기부참여	16.3	18.2	24.7	20.4	16.6	24.2	31.7
부정기적 기부참여	83.7	81.8	73.9	79.6	80.4	75.3	67.3

다음 <표 15>에 의하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와 ‘개인적 상황’이 주를 이루었다. 2007년과 2009년 조사 대비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인적 상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¹⁹⁾

(단위 : %)

구 분	개인적 상황모름	기부에 관심없음	기부대상 불신	기부방법 모름	직접요청 없음	기부가 책임아님	모름/ 무응답	기타
2007년	22.2	40.1	14.5	2.9	12.1	7.7	0.5	-
2009년	29.8	31.9	11.8	8.1	6.5	8.8	2.5	0.4
2011년	35.7	30.1	8.8	8.8	7.2	6.8	2.5	-

18) 앞글, 23쪽 그림 III-5 재구성

19) 앞글, 27쪽 그림 III-12 재구성

다음 <표 16>에 의하면 향후 1년 내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46.2%로 2009년(42.0%)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16> 기부 의향²⁰⁾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2009년	42.0	40.6	17.4
2011년	46.2	38.1	15.7

다음 <표 17>에 따르면, 유산기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산기부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5.5%에서 2011년 71.6%로 증가하였다.

<표 17> 유산기부 의향²¹⁾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2005년	25.7	68.8	5.5
2007년	19.2	67.6	13.2
2009년	22.3	65.5	12.2
2011년	15.9	71.6	12.5

아래 <표 18>에 따르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중캠페인 활성화’(38.6%),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35.9%), ‘지도층의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 앞글, 30쪽 그림 V-1 재구성.

21) 앞글, 33쪽 그림 VI-1 재구성.

<표 18>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²²⁾

(단위 :%)

대중캠페인 활성화	38.6
기부/자원봉사 관련 제도적 지원강화	36.1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신뢰도 상승	35.9
사회 내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30.7
기부/자원봉사 방법의 다양화	18.3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나눔/자원봉사	13.9
기부/자원봉사 방법의 편리성 증대	11.4
내가 속한 공동체의 나눔/자원봉사	7.8
비영리조직의 기부/자원봉사 요청	6.5

(3) 소 결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2012(Giving Korea 2012)를 통해 개인의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실태를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양 조사는 표본집단과 표본수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향 혹은 흐름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 내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 본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의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항목 중에서 ‘유산기부’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유산기부의 경우 조사대상의 37.3%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빙코리아 2012에 의하면 유산기부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65.5%) 대비 2011년(71.6%) 증가하여 향후 유산기부에 대한

22) 앞글, 37쪽 VII-4 그림 재구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60대 이상이 유산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78.8%)한데 반해 10대가 긍정적 태도(49.2%)를 보이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증대’(54.8%),²³⁾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20.6%), ‘나눔교육/대중캠페인 등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16.1)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빙코리아 2012에서는 ‘대중캠페인 활성화’(38.6%),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35.9%), ‘지도층의 모범적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0.7%) 등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이는 기빙코리아 2012의 경우 복수응답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영리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에 대해 응답이 좀 더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2.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 사회공헌백서를 작성한 이래로 2005년부터 매년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도 2년 단위로 한국의 매출액 2000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빙코리아2013」을 중심으로 법인(기업)의 재산의 사회환원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7년 12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있다. 이는 개인기부비율이 기부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특히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고액기부가 개인기부 확산에 많은 영향을 줘서 민간 재산의 사회환원을 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클럽의 2012년 한해 가입회원은 126명이고, 약정기부금액은 133억원이다. <http://www.chest.or.kr/>

(1)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²⁴⁾

i) <표 19>에 따르면, 2011년 조사에서 응답한 기업(222개사)의 총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은 약 3.12조원으로, 2002년 약 1.09조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업 평균 사회공헌비용은 140억 7,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20>에 따르면, 2011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6%로 2010년 0.2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표 19> 기업 사회공헌비용 총지출액 및 평균지출액 규모 추이²⁵⁾
(단위: 백만원)

년 도	총지출액	평균지출액
2002년(202개사)	1,086,594	5,379
2004년(227개사)	1,228,432	5,412
2005년(244개사)	1,402,510	5,747
2006년(202개사)	1,804,816	8,979
2007년(208개사)	1,955,642	9,402
2008년(209개사)	2,160,141	10,336
2009년(220개사)	2,651,756	12,053
2010년(220개사)	2,873,505	13,061
2011년(222개사)	3,124,105	14,073

24)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조사기간이 2011.8월~10월으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전경련 회원사 등 600개 기업 중 2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기업의 사회공헌규모, 2011년 임직원 사회봉사 실적 및 제도, 사회공헌 추진을 위한 사내제도, CEO사회공헌 인식조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게재하고 있다(응답률은 37.0%).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47쪽.

25) 앞글, 54쪽 그림 1-1 및 1-2 재구성

<표 20>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²⁶⁾

(단위: %)

년 도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비율
2004년(201개사)	0.2
2005년(197개사)	0.2
2006년(194개사)	0.3
2007년(205개사)	0.2
2008년(208개사)	0.1
2009년(219개사)	0.23
2010년(218개사)	0.24
2011년(222개사)	0.26

ii) <표 21>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지출비용 형태는 기부(68.8%)가 직접사업(31.2%)의 약 2배 이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의 비중(38.3%)이 가장 높았다. 직접사업 형태의 경우도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46.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2011년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비율²⁷⁾

(단위: %)

분 야	전체	기부금	직접사업
사회복지	38.3	33.9	46.0
교육·학교·학술연구	23.2	29.0	13.0

26) 앞글, 55쪽 그림 I-3 재구성

27) 앞글, 59쪽 표 1-9 재인용

분 야	전체	기부금	직접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	11.6	10.9	12.8
해외지원	3.8	3.3	4.5
의료보건	3.4	0.8	7.9
환경보전	2.6	2.2	3.3
농촌지원	2.4	0.5	5.7
응급 및 재난 구호	1.1	1.4	0.5
기타	13.7	17.9	6.3

주: 1) 해당항목 응답기업 기준(184개사)
 2) 해당항목 응답기업 기준 총 지출액 2조 4,206억원
 (기부금1조4,428억+직접사업 8,777억원)

iii)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사출연재단(특정공인법인)에 대한 기부가 41.7%로 가장 높고, 시민단체등 NGO에 대한 기부(17.1%), 주요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지정기부금 11.5%) 순으로 나타났고,²⁸⁾ 현금 기부액이 97.3%²⁹⁾로 기부금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표 22>에 따르면, 자사출연재단이 아닌 NGO 등 외부단체에 기부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사회적 필요성 및 효과성’(58.4%)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으로 선택되었고, 그 다음으로 ‘자사의 사회공헌 전략과의 연계성’(39.2%)이 우선 고려되었으며, ‘단체의 역량 및 투명성 정도’와 ‘타기업과의 사업차별성’의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율이 낮았다.

28) 앞글, 61쪽, 그림 1-6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 참조

29) 앞글, 62쪽, 표 1-13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 참조

<표 22> 외부단체에 기부시 고려기준³⁰⁾

구 분	1순위	2순위
자사 사회공헌 전략과의 연계성	65(39.2%)	88(53.0%)
사회적 필요성 및 효과성	97(58.4%)	52(31.3%)
단체의 역량 및 투명성 정도	4(2.4%)	17(10.2%)
타 기업과의 사업 차별성	0(0.0%)	9(5.4%)
기타	0(0.0%)	0(0.0%)

주: 해당항목 응답기업 기준(166개사)

v) 응답 기업(170개사) 가운데 기부를 저해하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전문성 부족(26.8%)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정 부족’(28.3%), ‘반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를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vi) 응답기업(194개사)의 대부분이 사회공헌 추진과 관련 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자 구성 도입(96.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CEO 인식조사 결과 CEO 대부분은 기업 사회공헌을 기업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4%).

vii) <표 23>에 의하면 사회공헌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53.6%), ‘고객과 신뢰감 형성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38.7%)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0) 앞글, 63쪽 표 1-14 재인용

<표 23> 사회공헌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이유(중복응답)³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53.6%
고객과 신뢰감 형성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38.7%
창립 이후 이어져온 경영철학이므로	3.4%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	3.4%
조직 내부 결속력 강화 등에 효과적	0.9%
기 타	0.0%

(2) 기빙코리아 2013 조사³²⁾

i) 2013년 설문조사 참여기업(400개사) 중 사회공헌활동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86.3%)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3.8%)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³³⁾

ii) <표 24>에 의하며 기부한 기업의 평균기부액은 2억8천만으로 대기업은 평균 67억9천만원, 중소기업은 1억1천만으로 나타났다. 기업유

31) 앞글, 73쪽 그림 재구성

3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제13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3」에서 한동우 부소장이 “2012년도 한국의 기업기부지수”를 조사·발표하였다(이하 “기빙코리아 2013”이라 한다.). ‘기빙코리아 2013’은 매출액 2000위 이내 기업 중 400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인용한 온라인 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CAWI)를 실시한 결과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경험 및 조직, 2012년도 사회공헌실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요인 및 장애요인, 사회공헌활동성과, 사회공헌활동 정책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http://www.beautifulfund.org/?c=3/14/85&uid=26557>(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참조.

33)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13”, 8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여부’ 참조.

형별로 보면 상장기업은 평균 14억6천만원, 비상장기업은 1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4> 2012년 한국 기업의 기부금 현황 : 기부금 평균

(단위: 천원)

구 분		N	M	SD
전 체		11,033	280,609	3,770,113
규 모 별	대기업	277	6,791,076	20,626,713
	중소기업	10,756	112,945	1,582,143
유 형 별	상 장	평균	1,318	1,468,886
		대기업	177	8,377,808
		중소기업	1,141	397,125
	비상장	평균	9,715	119,400
		대기업	100	3,982,561
		중소기업	9,615	79,220

iii) 기부금 항목별 비율을 보면 지정기부금(44.7%)이 가장 높으며, 법정기부금(33.6%), 기타기부금(2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 분야별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비율이 36.4%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23.8%), 교육장학(16.5%), 문화진흥(5.1%), 해외구호 등 구제활동(3.1%) 순으로 나타났다.³⁴⁾

iv) 기부방식에 따른 기부 비율은 ‘기부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등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44.3%)가 가장 많았고,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에 기부’(28.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11.2%), ‘자사가 설립

34) 앞글, 28쪽, 그림 ‘기부금 분류별 기부 비율 및 평균금액’ 참조

한 기업재단에 출연’(8.4%)이 뒤를 이었다.³⁵⁾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86.1%)가 가장 높고,³⁶⁾ 사회공헌활동 결정 요소는 ‘CEO의 의지’(77.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³⁷⁾

v)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 외적 장애요인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심지원부족’(29.3%), ‘기업사회공헌 관련 법제도 미흡’(22.6%), ‘기업사회공헌에 관한 사회적 편견’(18.6%), ‘공익단체 등 비영리조직의 역량 부족’(18.0%)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내적 장애요인으로는 ‘사내 인력 및 전문성 부족’(23.8%),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정보 부족(18.0%), ‘전담부서(인력) 부재’(15.7%) 순으로 나타났다.³⁸⁾

vi) 정부의 사회공헌활동의 세제혜택에 대한 인지 수준은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58.3%), ‘모른다’(22.5%),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19.3%)로 나타났다.³⁹⁾

vii)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배치 여부와 관련하여 ‘전담인력은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다’(53.0%)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전담인력만 있다’(16.5%), ‘전담 조직과 인력이 있다’(15.4%),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15.1%) 순으로 응답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기업(84.9%)이 전담조직 또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viii) 자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주요 성과는 ‘기업이미지 개선 등 평판도 향상’(80.6%), ‘조직문화 개선’(75.1%), ‘매출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28.7%) 순으로 나타났다.⁴¹⁾

35) 앞글, 32쪽, 그림 ‘기부 방식별 기부 비율’ 참조

36) 앞글, 37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유’ 참조

37) 앞글, 38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결정 요소’ 참조

38) 앞글, 38-39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외적·내적 장애요인’ 참조

39) 앞글, 41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세제혜택제도 인지 여부’ 참조

40) 앞글, 20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 참조

41) 앞글, 40쪽, 그림 ‘사회공헌활동 성과 평가’ 참조

제 3 절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1.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아래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세자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 CAF)⁴²⁾이 발표한 2012년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⁴³⁾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행위 참여비율은 36%로 전세계 146개국 중 45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0년 81위⁴⁴⁾, 2011년 57위⁴⁵⁾에 비하여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은 33%로 아일랜드(79%), 호주(76%), 네덜란드(73%), 미국(57%) 등 기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42) 자선원조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은 1924년 설립된 기관으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민간자금의 설립, 공급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1974년에 현재의 명칭(조직)으로 변경되었다. (<https://www.cafonline.org/navigation/top/about-us.aspx> 2013.10.3.방문). 자선원조재단은 지난 2006년 전국민간단체협의회(NCVO)와 함께 세계12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규모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도, 상호비교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였는데,「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2006) 작성시 한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주언, 이희길, 나눔통계개선방안, 통계개발원, 2011, 48쪽 각주 재인용

43) 세계 기부 지수(World Giving Index)는 자선원조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에 의해 ‘지난달에 자선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지난달에 자선단체에 시간을 들여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지난달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를 세계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매년 국가별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1위가 호주,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조사되었고, 2011년도 1위였던 미국은 5위로 밀려났다(<https://www.cafonline.org/PDF/WorldGivingIndex2012WEB.pdf> 원문참조).

44) [tps://www.cafonline.org/research/publications/2010-publications/world-giving-index.aspx](https://www.cafonline.org/research/publications/2010-publications/world-giving-index.aspx) (2013.10.3. 방문): CAF(Charities Aid Foundation), The World Giving Index 2010, p.34

45) [tps://www.cafonline.org/publications/2011-publications/world-giving-index-2011.aspx](https://www.cafonline.org/publications/2011-publications/world-giving-index-2011.aspx) (2013.10.3. 방문): CAF(Charities Aid Foundation), The World Giving Index 2011, p.43

<표 25> 2012 세계기부지수⁴⁶⁾

국 가	세계기부지수 순위	세계기부지수 기부행위참여율 (%)	기부금(%)	기부금 순위
호 주	1	60	76	2
아일랜드	2	60	79	1
캐나다	3	58	64	10
뉴질랜드	4	57	66	8
미 국	5	57	57	13
네덜란드	6	53	73	3
인도네시아	7	52	71	5
캄보디아	40	37	61	12
케냐	40	37	23	69
콜롬비아	42	37	23	69
수 단	43	36	19	86
가 나	44	36	23	69
대한민국	45	36	33	40
몽 골	46	35	42	30
우간다	46	35	20	80

GDP 규모대비 우리나라 기부금 지출액의 비율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2011년 GDP 대비 기부금 지출액이 약 2.0%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액 비율은 약 0.9%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Charities Aid Foundation(CAF), World Giving Index 2012, p.62~63 부분발췌

<표 26> GDP 대비 기부금 지출 수준

(단위: 조원, 억달러, %)

구 분	기부금(A)	GDP(B)	A/B
한 국	11.15	1,235.16	0.9
미 국	2984.2	150,648.2	2.0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⁴⁷⁾, Giving USA 2012⁴⁸⁾, IMF Data and Statistics⁴⁹⁾

2. 개인기부 규모

i) 아래 <표 27>에서 보는 같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⁵⁰⁾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는 약 11.15조원으로, 이중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7.08조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기부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기부금 총액도 2011년 7.0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7>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⁵¹⁾

(단위 : 조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 인	근로소득자	4.23	4.27	4.64	4.86	5.18

47) http://ecos.bok.or.kr/flex/Key100Stat_k.jsp 2013.10.3 방문

48)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Giving USA 2012 Executive Summary, Giving USA Foundation, p.8

49)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2013.10.3 방문

50) 연도별 국세청 통계연보 다운로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51) 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붙임2 나눔참고자료 2쪽, 연도별 기부총액 인용 및 보완(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4-2-1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소득자	1.14	1.40	1.51	1.67	1.90
	소 계	5.37	5.67	6.15	6.53	7.08
	비 율	61.7%	62.6%	64.0%	65.1%	63.5%
법 인	금 액	3.33	3.38	3.46	3.50	4.07
	비 율	38.3%	37.4%	36.0%	34.9%	36.5%
합 계		8.70	9.05	9.61	10.03	11.15

ii) 아래 <표 28>를 보면, 2011년 개인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약 138만원이므로 종합소득자가 평균 275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17만원의 약 2배 이상이다. 기부금 총액은 근로소득자가 5.18조원으로 종합소득자의 1.90조원보다 많다.

<표 28> 1인당 평균 기부금(2011년)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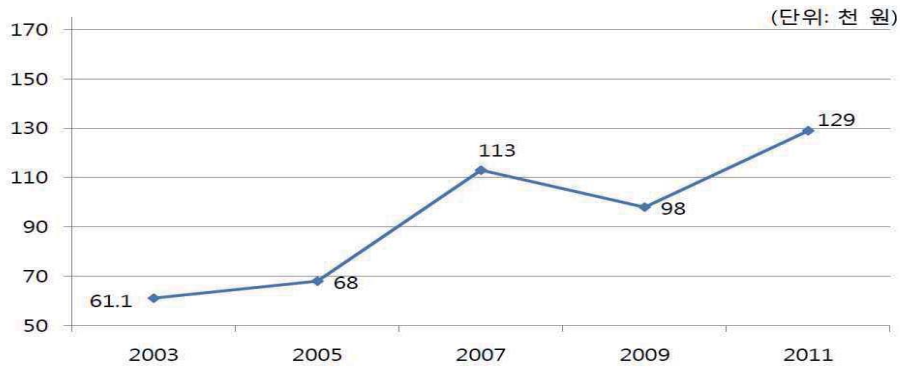
구 분		신고금액	공제인원	1인당기부금
개 인	근로소득자	5.18조원	443만명	117만원
	종합소득신고자	1.90조원	69만명	275만원
	소 계	7.08조원	512만명	138만원
법 인	금액	4.07조원	46만개	885만원
기부금 총계		11.15조원	-	-

현황 중 기부금공제 항목 및 3-4-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및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재구성하여 추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4-2-1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중 기부금공제 항목 및 3-4-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및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재구성하여 추가.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5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4-2-1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중 기부금공제 항목, 3-4-7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현황 및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재구성.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iii) 아래 <그림 1>에 따라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2003년 약 6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3만원 정도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한국인의 평균기부 금액(secular giving)의 연도별 추이⁵³⁾



iii)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316건에 이른다.⁵⁴⁾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학술·장학 관련 단체로 24.8%이며, 이를 이어서 교육분야가 23.7%, 사회복지분야가 2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익법인이 학술·장학분야와 교육분야에 편중되어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공익법인 현황⁵⁵⁾

구분	교육	학술·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합계
법인수	1,495	1,565	1,423	819	322	692	6,316
비율(%)	23.7	24.8	22.5	13.0	5.1	10.9	100

53)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12, 43쪽 그림 재인용

54) <http://npoinfo.hometax.go.kr/distribution/wepa8802.jsp>

55)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

3. 기부 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규모

i) <표 30>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2011년 법인 기부금 규모는 4.07조원으로 이는 법정·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계한 금액이다. 법인 기부금 규모는 개인기부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당 평균 기부액은 2010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1년 대폭 증가했다. 법인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기부금 신고법인수가 일반법인보다 훨씬 많으나, 기부액은 일반법인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기부금신고 법인 수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보다 월등히 많지만, 기업당 평균 기부액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많다.

<표 30> 법인의 기부금 신고현황(2011년)⁵⁶⁾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당 평균 기부액	신고법인수	기부금		
			소 계	법정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2007년	8.93	372,141	3,325,078	1,973,408	1,351,670
2008년	8.48	398,331	3,378,565	1,843,187	1,535,378
2009년	8.25	419,420	3,460,709	1,895,287	1,565,422
2010년	7.96	440,023	3,504,459	2,001,711	1,502,748
2011년	8.83	460,614	4,068,045	2,423,360	1,644,685

5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인용 및 재구성

제 2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구 분	기업당 평균 기부액	신고법인수	기부금		
			소 계	법정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인규모별		460,614	4,068,045	2,423,360	1,644,685
일반법인	39.20	91,514	3,587,473	2,251,220	1,336,253
중소기업	1.30	369,100	480,572	172,140	308,432
상장 / 비상장		460,614	4,068,045	2,423,360	1,644,685
상장법인	1,000.74	1,781	1,782,312	932,797	849,515
비상장법인	4.98	458,833	2,285,733	1,490,563	795,170

ii) 아래 <표 31>에서 보듯이,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의하면 2011년 한해 동안 기업(법인)은 사회공헌에 대한 총지출액이 약 3조 1,241억원 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1조 9,556억 6,400만원에 대비하면 4년만에 약 1조 1,684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매년 지출액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 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액 증가율 추이⁵⁷⁾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상 기업수(개)	208	209	220	220	222
총 지출액 규모	1,955,642	2,160,141	2,651,756	2,873,505	3,124,105

57)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54쪽 표 1-3 일부발췌 재인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도 대비 증가율(%)	8.4	10.5	22.8	8.4	8.7

4.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규모

i) 통계청 사회조사(2011)에서 현금기부의 경우 기부경로로 ‘모금단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부금 모금기관의 모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는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 주요 모금기관 모금액⁵⁸⁾

(단위: 억원, %)

구 분	모금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법정 기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700	3,425	3,506	3,692
	대한적십자사	642	616	790	1,343
민간 기관	월드비전	706	919	1,229	1,420
	기아대책기구	527	665	738	876
	어린이재단	513	562	710	720
	유니세프	273	325	614	712
	한국컴패션	173	287	430	471
	굿네이버스	253	331	407	539

58) 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나눔문화 선진국,’ 보도자료 2012.12.17, 붙임2 나눔참고자료 3쪽 표 재인용

제 2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구 분	모금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세이브더칠드런	99	121	171	235
	해비타트	57	73	74	77
	합 계	5,943	7,324	8,669	10,085

ii)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모금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앞에서 <표 12>에서 본 바와 같이 통계청 사회조사(2011)에서도 기부문화 확산 방안으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⁵⁹⁾에 이어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의 공시가 의무화 되었는데⁶⁰⁾ 이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 hom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9)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와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제출 서류에 기부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의안번호 1904489, 2013년 4월 11일 원혜형의원 대표발의).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법 제5조에서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로 현재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④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5년간의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회지도층의 기부 활동 등을 유도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나,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바, 기부내역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 3쪽)이 있다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참조

제 3 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제 1 절 개 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산의 사회환원이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도 현행 법령상에서 재산의 ‘출연’, ‘증여’, ‘유증’, 그리고 ‘기부금’, ‘기부금품’, ‘나눔’ 등과와 결부되어, 기존의 공익단체나 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새로운 공익단체나 법인을 설립하여 공익활동을 하거나, 공익신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사회환원되는 재산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규율하는 일반 기본법으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⁶¹⁾되어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모집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는 「재해구호법」⁶²⁾,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61)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62) 동법에서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기부금품 중 하나인 의연금품에 대하여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2조 검사 등,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그리고 제6장 벌칙(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 과태료)으로 규율하고 있다.

법률」⁶³⁾, 「문화예술진흥법」⁶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⁶⁵⁾,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⁶⁶⁾, 「결핵예방법」⁶⁷⁾,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환원되는 재산이 기부되는 방식과 기부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탁법」, 「비영리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또한 사회에 환원된 기부 재산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소관 부처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

-
- 63) 동법에 따르면, 과학관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과학관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다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 64) 동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제18조),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 65) 동법에 따르면,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고,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모금)).
- 66) 동법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재단목적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67) 동법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철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철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으며,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모금 등)).

정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률 현황은 <표 33>과 같다.

<표 33>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률 현황(예시)

	법률명	주요내용	소 관
기 부 금 품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안전행정부
	재해구호법	의연금품의 모집·사용 규정	소방방재청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규정	문화체육 관광부
	신탁법	공익신탁에 관한 사법관계 규정	법무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법인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규정	환경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규정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 관련 일반 규정	보건복지부
세 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의무부과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공익활동 단체 및 법인과 관련한 법률 현황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우리나라의 공익활동 단체 및 법인 관련 법률 현황(예시)

법률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규정	법무부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규정	법무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규정	안전행정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
사립학교법 등	법률의 목적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관련 규정	교육부 등 각 소관부처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기존의 자선 등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 단체나 법인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환원하는 방식, 둘째로 재산의 출연이라는 환원방식을 선택하여 자선 등의 공익사업을 할 새로운 비영리·공익 단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셋째로 공익목적의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환원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의 유형별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관계 법령의 내용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제 2 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 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 재산인 현금,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 물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의 사회환원은 ‘증여’, ‘유증’, ‘기부금’, ‘기부물품’, ‘나눔’과 대체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자선 등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런 법률 중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법으로의 역할을 하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인 기부금 등에 대한 독자적인 모집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의 주도로 공동으로 모금·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의 모집, 배분 및 사용 업무를 규율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⁶⁸⁾

(1) 개 관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현행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은 총 18개조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목적(제1조), 용어 정의(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4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제5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제7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8조), 검사 등(제9조), 기부금품모집등록의 말소 등(제10조), 청문(제11조), 기부금품의 사용(제12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제13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제14조), 권한의 위임(제15조), 벌칙(제16조), 양벌규정(제17조), 과태료(제18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의 객체인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제2조제1호 본문)고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i)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ii)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iii)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의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

68) 최종개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시행 2013.3.23)

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iv)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단서).

그리고 이법은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 연 혁

이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1949년 「기부통제법」⁶⁹⁾으로 제정된 이래 법률의 폐지, 제정, 그리고 다수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한 제·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그 연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제정

6·25사변이후에 그동안 억제되고 있었던 기부금품모집행위가 성행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인플레이 등으로 국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1951년 「기부통제법」(법률 제68호)을 폐지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⁷⁰⁾되었다.

이 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i)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기부

69) 법률 제68호, 1949.11.24. 제정(시행 1949.11.24.), 1951년 폐지됨.

70) 법률 제224호, 1951.11.17. 제정(시행 1951.11.17시행)

금품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2조), ii) 다만, 국제적인 구제금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구휼에 필요한 금품, 국방기재헌납을 위한 금품,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를 위한 금품,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의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있다(제3조). 그러나, iii) 국제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제4조), 그리고 iv) 내무부장관은 기부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모집자에게 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거나, 공무원에게 임검 기타 실지 사무감독을 하게 지시할 수 있다(제7조).

2)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1995년 법률 전부개정(71)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년 제정법)의 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변경하여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 대상을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그리고 공익목적의 국민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축소하고(제4조), 나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i)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장부·서류 작성·비치를 의무화하고, ii) 기부금품의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시행 1996.7.1)

3) 200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06년 일부개정⁷²⁾에서는 기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명을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i)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제4조제1항),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제5조), iii)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제5조의2 신설), iv) 기부금품모집등록의 말소사유 구체화(제11조제1항), v) 모집된 기부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비율을 모집금액의 100분의 15이내로 상향(제12조의2 신설), vi) 감사보고서의 제출(법 제13조제3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2010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010년 일부개정⁷³⁾에서는, i)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이 법률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며(제3조제10호 신설), ii)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제7조제2항 본문), iii) 모집자의 모집 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하며(제9조제1항 단서 신설), iv) 기부금품의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4호 삭제)하고 있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관련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8개조로 구성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는 누구든지

72) 법률 제7908, 2006.3.24, 일부개정(시행 2006.9.25)

73) 법률 제10346호, 2010.6.8, 일부개정(시행 2010.6.8)

할 수 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은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금한 기부금품을 또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그것을 사용한 후에는 일정한 제도적 감시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아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규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관련 일반 규정

가.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제

가) 등록청

1천만원 이상의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⁷⁴⁾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①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나) 등록대상사업

등록대상사업으로는 i)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ii)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74) 모집·사용계획서에는 ①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②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④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⁷⁵⁾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iii)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그리고 iv)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①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③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④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⑤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⑥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⑦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⑧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법 제4조제2항)이 규정되고 있다.

다)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등록 대상사업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결격사유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라) 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1조).

나.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가)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75)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나) 국가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⁷⁶⁾, ②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다) 국가 등의 기부금품의 접수 보고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자발

76)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라) 기부심사위원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⁷⁷⁾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며(법 제5조제3항),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조제4항).

2)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가.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의 금지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①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②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법 제12조제1항).

나.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모집기부금액의 규모별로 아래 <표 35>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

7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②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③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④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을 말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 않는 모집금액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법 제13조).

<표 35> 모집금액별 모집비용 충당비율⁷⁸⁾

모집금액	적용비율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3)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사용의 투명성 확보

가.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모집 및 사용 결과의 공개 공지 등

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1항).

나) 접수사실의 기재,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 공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제7조제2항).

다)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의 인계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3항).

7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나. 등록청의 기부금품 관련 정보공개 의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나. 모집자의 기부금품 관련 공개의무 등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그리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①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다. 모집자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⁷⁹⁾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79)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

4) 행정청의 감독 등

가. 장부 등의 검사 등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⁸⁰⁾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나. 기부금품모집등록의 말소 등

등록청은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자 등록을 한 경우,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등에는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모집자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법 제10조제1항),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2항). 등록청은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5) 벌 칙

가. 징역 또는 벌금

i)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ii) 모집자의 기부금품

8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조제2항).

나. 양벌규정

제16조의 징역 및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법 제17조).

다. 과태료

i)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모집종사자, ii)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iii)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8조제1항).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⁸¹⁾

(1) 개 관

이 법은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하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인 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 및 관리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81) 최종개정: 법률 제11518호, 2012.10.22, 일부개정(시행 2012.10.22)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이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⁸²⁾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두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登記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4조).

모금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3조).

모금회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i)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ii)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 iii)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사업, iv)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사업, v)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사업, vi)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vii)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viii)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법 제5조).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법 제13조제1항).

8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i)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ii)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iii)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⁸³⁾, iv)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법 제17조).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제1항).

이 법은 총 37개조로 구성되며, 법의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정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업, 정관, 임원, 이사회, 사무조직, 분과실행위원회, 지회, 조직·운영 등,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재원, 기부금품의 모집, 복권의 발행, 모금창구의 지정, 배분자의 표시, 배분신청 및 심사 등,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배분사업의 평가, 배분결과의 공고 등, 재원의 사용 등, 사업계획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회계연도, 지도·감독 등, 시정명령 등, 보조금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연 혁

이 법은 1997년에 제정⁸⁴⁾된 이후, 1999년에 법률 전부개정⁸⁵⁾이 있었다. 고 2001년 일부개정법률⁸⁶⁾에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83)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④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⑥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⑦ 지방자치단체,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⑪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금 등에 배분하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84) 법률 제5317호, 1997.3.27, 제정(시행 1998.7.1)

85) 법률 제5960호, 1999.3.31, 전부개정(시행 1999.4.1)

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했으며(제18조의2 신설), 2008년 일부개정법률⁸⁷⁾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기부금품의 모집·배분·사용 등 관련 주요내용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배분·사용과 관련하여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i)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해서는 안되며, ii)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iii)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조)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아래서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사용 관련 일반 규정

가. 기부금품의 연중 모집·접수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나.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등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며,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86) 법률 제6486호, 2001.5.24, 일부개정(시행 2001.7.1)

87) 법률 제8938호, 2008.3.21, 일부개정(시행 2008.3.21)

다.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및 사용 등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법 제27조제1항), 모금회는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그러나 모금회는 기부자의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2)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배분·사용 관련 투명성 확보

가. 기부금품 접수의 장부기재 및 영수증 교부 등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나. 기부금품 모집창구의 지정 등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법 제19조).

다.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가) 배분공고 및 신청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공고하며(법 제20조제1항),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배분신청서를 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나) 배분신청의 심사 및 배분계획의 수립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모금회가 접수한 배분신청서에 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며, 모금회는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2조).

다) 배분결과의 평가 및 공고 등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법 제23조의2제1항), 또한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24조).

4) 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가.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나. 임원의 해임명령,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살펴본다.

가) 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 임원이 i)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 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⁸⁸⁾에는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나) 모금회 설립인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가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ii)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iii)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iv)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⁸⁹⁾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모금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8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서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89)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에서 11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 3 절 단체 · 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기부금 등을 받아서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 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을 출연하여 직접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이러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선 등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법 중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민 법⁹⁰⁾

(1) 개 관

「민법」은 제3장에서 “법인”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하고 있다. 「민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

90) 최종개정 : 법률 제11728호, 2013.4.5., 일부개정(시행 2013.7.1)

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9조), 민법규정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을 출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도 재산의 사회환원을 토대로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아래에서는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인 설립 등의 주요내용

1)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주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제32조).

2) 법인성립의 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

3)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과 변경 등

가. 법원에 의한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제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44조).

나.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한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으나(제45조제1항), 재단법인의 설립자나 이사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4)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제1항).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제2항).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제48조제1항)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제48조제2항).

6)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i)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ii)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사단법인에 있

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iii) 앞의 i)과 ii)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 주무관청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며(제37조), 또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⁹¹⁾

(1) 개 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종교법인, 언론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자선, 장학 등의 공익적 활동으로 사회에 대한 공헌이 활발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공과금을 면제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자가 공익법인을 통한 사적 목적을 위한 탈법행위가 이루어져 사회에 피해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제, 감독관청에 의한 검사 및 감독권,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규제 만으로서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되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유지하며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법 제1조) 1975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⁹²⁾되었다.

91) 최종개정 : 법률 제10428호, 2011.3.7., 일부개정(시행 2011.9.8)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법 제2조).

이 법은 총 20개조로 구성되며, 법의 목적(제1조), 적용 범위(제2조), 공익법인 정관의 준칙 등(제3조),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제4조), 공익법인의 임원 등(제5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감사의 직무(제10조), 공익법인의 재산(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제12조), 해산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제13조),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제14조), 공익법인의 조세 감면 등(제15조),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제16조 및 제16조의2), 감사, 벌칙(제1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1) 1995년 개정

이 법은 공익법인을 우회적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 내용을 반영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며, 청문절차를 신설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⁹³⁾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제5조제5항), ii)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제16조의2 신설), iii)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제17조제2항 신설) 공

92) 법률 제2814호, 1975.12.31, 제정(시행 1976.4.1)

93) 법률 제4932호, 1995.1.5, 일부개정(시행 1995.4.6)

익법인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2004년 개정

기존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 이사의 취임 승인 취소의 근거가 되는 규정(제14조제2항)이 취소사유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⁹⁴⁾됨에 따라, 2004년에 개정⁹⁵⁾되었다. 이 개정법률에서 이사취임승인 취소사유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로는, i)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ii) 회계부정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iii)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이다(제14조제2항).

3) 2011년 개정

이 2011년 최종개정법률이 현행법이다. 2011년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⁹⁶⁾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11조제3항 단서 신설)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법인의 목

94)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95) 법률 제7228호, 2004.10.16, 일부개정(시행 2004.10.16)

9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하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1)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기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회비 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2) 공익법인의 재산

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11조제1항).

기본재산은, i)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ii)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iii)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iv)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시행령 제16조제2항).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3항).

나. 기본재산의 정관에의 기재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법 제11조제2항).

다.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가)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허가제

i) 기본재산 매도 등의 허가사유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본문).

ii) 허가대상 장기차입 금액의 기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나)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등의 신고제

i)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⁹⁷⁾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는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97)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이러한 신고제도의 도입은 일반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허가제인 점에 비하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법 제13조).

3) 공익법인의 임원 등의 구성의 투명성 제고 등

i) 주무관청의 승인 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와 감사의 수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증감할 수 있으며(제5조제1항),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5조제2항).

주무관청은 감사 중 1명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제5조제8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제5조제9항).

ii) 특수관계자⁹⁸⁾의 제한

98) 특수관계자라 함은 i)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ii) 출연자 또는 이사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iii)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임명할 수 없으며(제5조제5항),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이어서는 안된다(제5조제8항).

4) 예산 및 결산의 투명성 제고

가. 주무관청에의 사업계획·예산 제출 및 결산 보고 등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법 제12조제1항).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제2항).

나. 성실공익법인재산의 제출서류 추가

ii) 성실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하여 법령상 더 많은 편익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그 만큼 의무사항이 부가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제출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그리고 ㉣ 기본재산의 목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3호).

를 포함한다), iv)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그리고 v)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5)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

가. 주무관청의 감독권

가) 이사 취임승인 취소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그 내용으로는 ①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② 공익법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즉,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이 i)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ii)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iii)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14조제2항).

나) 공익법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i)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또는 ii)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제3항).

나. 감사 등

가) 주무관청의 감사 등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나)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기관의 감사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의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2항).

6) 설립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가.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ii)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iii)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iv)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v)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vi)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vii)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공익법인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2항).

나. 청 문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7) 벌금 또는 징역

i) 법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제1항).

ii)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제2항).

iii) 이사나 감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법 제19조제3항).

8) 조세 감면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법 제15조).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⁹⁹⁾

(1) 개 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2000년에 제정¹⁰⁰⁾되었다.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99) 최종개정 : 법률 제12046호, 2013.8.13., 일부개정(시행 2013.8.13)

100) 법률 제6118호, 2000.1.12, 제정(시행 2000.4.13)

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이 법은 총 13개조로 구성되며, 용어 정의(제2조), 기본방향(제3조), 등록(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5조), 보조금의 지원(제6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제8조), 사업보고서 제출(제9조), 조세감면(제10조), 우편요금의 지원(제11조), 보조금의 환수등(제12조), 벌칙(제1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 주요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및 수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항).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공시 및 통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4조제2항).

3)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8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4) 보조금의 지원

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법 제6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공익사업 선정

가) 보조금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 결정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¹⁰¹⁾을 결정한다(제7조제1항), .

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제7조제3항).

101) 보조금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①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그리고 ③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5조)

다) 공개경쟁에 의한 지원사업의 선정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개경쟁방식의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 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제7조제2항).

라) 선정기준의 공고 및 통지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제4항).

5)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보조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6) 보고금의 환수 및 징수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i)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그리고 ii)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며(제12조제1항),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12조제2항).

7) 벌금

i)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3조제1항), ii)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제2항).

5. 소 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은 허가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이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공익성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은 더욱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공익법인법은 벌칙조항을 두어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규제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재산의 사회환원의 결과로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법은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비영리단체가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제2항).

비영리단체지원법은 일정한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비영리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운영상의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은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한 비영리 공익활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법인격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산의 사회환원을 직접 단체를 설립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법의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또한 분야별 주무관청별로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체 등을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1. 개 관

오늘날 재산의 사회환원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요청과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익신탁’이 재산의 사회환원의 활용모델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이에 ‘신탁’에 관한 현행법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 관련한 현행법으로는 신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신탁법」이 있다.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타법 개정으로 이어져 오다가, 2011년에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2012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2011년 「신탁법」¹⁰²⁾은 총 12장 147개 조로 편제되어, 각 장별로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제6장 신탁사채, 제7장 신탁의 변경, 제8장 신탁의 종료, 제9장 신탁의 감독, 제10장 공익신탁, 제11장 유한책임신탁, 그리고 제12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탁법」중에서 신탁의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제1장 총칙 규정과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제10장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법」의 일반규정

(1)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

102) 법률 제10924호, 2011.7.25., 전부개정(시행 2012.7.26)

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2조).

(2) 신탁의 설정

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 설정할 수 있으며(제3조제1항), 위 ③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제3조제2항).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위 ③의 방법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제3항).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제4항).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제5항).

(3)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1)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조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제4조제3항).

2)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조제2항).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¹⁰³⁾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제4조제4항).

(4) 신탁재산

1)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제1항).

2)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23조).

3)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

103) ① 신탁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②「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③「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 ④「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법령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사업을 할 때 환지, 체비지(替費地) 및 보류지(保留地)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신탁법 시행령 제2조)

한다(제24조).

4) 상계 금지

i)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하지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ii)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하지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않음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제25조제2항).

5)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제27조).

6)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i)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하며, ii)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제29조제1항 및 제2항).

(4) 법원의 신탁 감독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3. 「신탁법」의 공익신탁 규정

(1) 공익신탁의 대상

공익신탁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그 대상이다(제106조).

(2) 공익신탁의 허가 및 감독

수탁자는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107조), 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법 제108조).

(3) 공익신탁의 변경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이외의 신탁의 변경,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09조제2항).

(4) 주무관청의 수탁자 사임 허가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법 제110조).

(5) 주무관청의 검사·보고 등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11조).

(6) 주무관청의 수탁자 해임 및 선임

주무관청은 ①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이나,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 제112조제2항).

(7) 주무관청의 공익신탁 계속처분

공익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법 제113조).

4. 소 결

현행 「신탁법」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으로 분류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신탁법은 사익신탁에 대하여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절차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신탁이라는 사법관계를 공법관계로 편입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은 신탁설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 사익신탁에 비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재산의 공탁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익신탁이 본래의 취지에 따른 신탁설정과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공익신탁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이 어딘가에 따라 공익신탁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재량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재산의 사회환원의 수단으로서 신탁 특히 공익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조세관계법에서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행 조세관계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¹⁰⁴⁾

(1)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65년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¹⁰⁵⁾되었다. 이 제정법은 총 10개조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으로 ① 조세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산림법상의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 면제대상을 규정하며, ③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 법인 규정, ④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제대상 규정, 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 면제를 규정하였다.

104)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시행 2013.7.1)

105) 법률 제1723호, 1965.12.20., 제정(시행 1966.1.1)

(2)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명 변경

그 후 1981년, 1993년, 그리고 1998년에 총 3번의 전부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전부개정법률¹⁰⁶⁾은 법명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명되어 현행법의 제명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3) 2010년 특례기부금의 삭제 개정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¹⁰⁷⁾에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제73조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법정·특례·지정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기부금 구분체계로 변경되어 기부금제도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제도로 이원화되었다.

이는 기부금 단체 간 불형평이 발생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특례기부금 단체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되었다. 예컨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있던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에 대한 교육비·연구비 등은 조세특례법 제73조의 삭제로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4) 201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액 설정 및 설정대상 신설 개정

201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¹⁰⁸⁾에서는 재산의 사회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주자의 소득세 소득공제 등

106) 법률 제5584호, 1998.12.28., 전부개정(시행 1999.1.1)

107) 법률 제10406호, 2010.12.27., 일부개정(시행 2011.1.1)

108) 법률 제11614호, 2013.1.1., 일부개정(시행 2013.1.1)

의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한도액 설정대상에 지정기부금을 포함하고 있다(제132조의2).¹⁰⁹⁾ 이러한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하는 신설 조항은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문화의 확산을 막는 제도로 작동할 수도 있다.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비과세, 소득공제, 그리고 이월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09) i)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②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다만,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그리고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1항). ii)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2항). iii)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조세특례법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제3항).

(1) 소득세법

1) 비과세 소득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제12조).

2)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i)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¹¹⁰⁾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를 제외하

110) 이에는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③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금액, 그리고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 이후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이 해당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에는 i)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으로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고는 과세가액의 30%를, ii) 법정기부금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이는 종래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 확산에 미흡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개인과 법인 간 법정기부금단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 이후의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에서 부터 ㉣까지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ii)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iii)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iv)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일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v)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단체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vi)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로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해당한다.

의 구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한 것이다(법 제34조).¹¹¹⁾

3) 기부금의 이월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3년,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법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¹¹²⁾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단체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과 취소

가.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i)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을 것, ii)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

111) 법률 제10408호, 2010.12.27., 일부개정(시행 2011.1.1)

112) 법률 제11146호, 2012.1.1, 일부개정(시행 2012.1.1.)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iii)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iv)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 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v)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vi)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vii)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취소 및 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ii)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안전행정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iii)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그리고 iv)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미리 의

건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2) 법인세법¹¹³⁾

1) 비영리법인의 정의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법 제1조제1호 및 제2호).

2) 기부금의 손금¹¹⁴⁾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i)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과세가액의 10%를, i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그리고 비영리교육재단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과 같은 기부금(법정기부금)은 과세가액의 50%를 손금으로 산입한다(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13) 법률 제11873호, 2013.6.7., 타법개정(시행 2013.7.1).

114)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¹¹⁵⁾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제29조제1항). 그러나,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8항).

4) 기부금의 이월공제

「법인세법」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제24조제4항).

5)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및 취소 등

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i) 비영리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ii) 비영리법인 해산시

115)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iii)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iv)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v)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vi)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나.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등의 보고 및 통보

가)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법인의 보고의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법인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나) 주무관청의 통보의무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법인이 요건 충족여부등에 관한 보고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법인이,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ii)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iii)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iv)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취소요건인 위 ii)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지정기부금지정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8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¹¹⁶⁾

(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¹¹⁷⁾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등,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법 제12조제1호, 제6호 및 제7호),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7호)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법 제46조), 그리고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제7호)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여기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법 제16조제1항본문중). 이러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과세가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규

116) 최종개정 : 법률 제10366호, 2010.6.10(타법개정), 2012.6.11(시행)

117)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정을 살펴본다.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16조 제1항).

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중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법 제16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제2호)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48조제1항 본문).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과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중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법 제48조제1항 단서조문).

(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17조제1항).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 제52조).

4. 외국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세법 현황

(1) 미 국

1) 개 관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문화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이어져서 미국은 기부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다수의 주가 자선모금법(Charitable Solicitation Statutes)을 제정하여 자선모금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모금을 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개인납세자의 기부금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의 기부금 공제는 1917년 조정 총소득의 15%까지 공제가 인정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공익자선단체 등에 대한 시민의 기부와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¹¹⁸⁾ 기업의 공익적 기부금의 손금 산입은 1935년에 과세 소득의 5%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계속 상향되어 1969년 세제 개정에서 당시 30% 였던 한도액을 공용자선과 사업형 개인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관해서는 50%까지 상향되었다.

또한 기업의 손금산입한도액이 과세소득의 5%에서 10%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4년 재정적자감축법(Deficit Reduction Act of 1984)에서는 개인의 조성형 개인재단에 대한 기부금공제한도도 당시의 조정 총소득의 20%에서 30%로 상향되었다.

118)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1994, p.653 참조.

소득공제되는 기부금품을 제공받을 수 비과세 기관은 미국 세법 §501(c)(3)에 따라 비과세 대상 기관 목록으로 수시로 발표되며, 그 대상으로는 종교, 자선,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아동 또는 동물학대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탁, 공동모금, 펀드, 재단 등이 해당된다.

2) 개인 기부의 소득공제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최대 50%이며,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로 나누어지며, 소득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부하는 자산의 종류(현금 혹은 현물자산)여부와, 기부를 받는 곳이 Internal Revenue Code(U.S.C. Title26. 이하 “IRC”라고 한다.) §501(c)(3)상 면세단체의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이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현금 기부금액과 기부자산의 조정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가. 현금기부

가) 50% 제한규정

공익자선법인(Public Charity Organization),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 민간비사업재단 중 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nduit Foundation), 민간비사업재단 중 공공펀드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mmon Fund Foundation)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조정 총소득의 50%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¹¹⁹⁾.

나) 30% 특별제한 규정

50%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면세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조정총소득의 30%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며, 단체 자체사용

119) 26 USC §170(b)(1)(A)

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의 경우도 그러하다.¹²⁰⁾

나. 현물자산기부

가) 30% 일반제한규정

50%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면세단체에 평가성 자산인 자본이득자산 (capital gain property)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조정총소득의 30% 한도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¹²¹⁾

나) 20% 특별제한규정

50% 제한 단체 외의 면세단체에 평가성 자산인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조정총소득의 20%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¹²²⁾

다. 이월공제

현금기부금액이 소득공제 50%한도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동안 소득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가 인정된다¹²³⁾

3) 법인 기부의 손금산입

기업이나 재단 등이 면세단체(미국 정부 관련 기관, 교회나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연구기관 등)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¹²⁴⁾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개인기부공제와 같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¹²⁵⁾

120) 26 USC §170(b)(1)(B)

121) 26 USC §170(b)(1)(C)

122) 26 USC §170(b)(1)(D)

123) 26 USC §170(d)

124) 26 USC §170(b)(2)(A)

125) 26 USC §170(d)(2)(A)

4) 연방 증여세(federal gift tax) 및 유산세(federal estate tax) 공제

생전에 대가 없이 현금 또는 물품의 재산 양도가 이루어 지면 증여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¹²⁶⁾, 사망시 유산자산을 양도하면 유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자이고, 유산세의 과세대상은 유산 자산이다. 증여받는 사람이나 상속인에게 증여세와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들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기부받는 비영리법인은 납세의 의무가 없다하겠다.

그러나 IRC §501(c)(3)의 면세단체에 대한 증여는 공제 대상에 속하므로,¹²⁷⁾ 증여자인 기부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즉 증여세 부과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또한 IRC §501(c)(3)의 면세단체에 기부된 유산도 유산세 공제 대상이므로,¹²⁸⁾ 유산기부를 받은 단체는 유산세 면제를 받게 된다.

5) 면세단체의 과세와 투명성 관리 제도

IRC §501(c)(3)의 규정에 따라 면세 단체의 인정을 받은 단체는 그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에서의 소득은 면세된다. 그러나 단체의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며 통상의 법인세율로 과세된다.¹²⁹⁾

126) 26 USC §2502(c)

127) 26 USC §2522(a)

128) 26 USC §2055(a)

129) 26 USC §501(b)

미국은 IRC §501(c)(3)에 의해 면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기금 또는 재단(community chest, fund, foundation)의 형태를 갖추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면세단체등록신청을 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신청서에 ① 이름, 주소 등 단체의 개요, ② 단체의 과거, 현재 활동, 차년도 이후의 활동, 모금, 보조금 등의 응모 상황, 임원 등의 성명, 친족 관계 및 기업 관계자 등의 유무, 정치 단체 및 기타 공공 단체와의 관계, ③ 기부금 우대 단체 유형 선택 (공공자선 이나 개인 재단 등), ④ 과거 4년분 재정데이터(4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는 현황과 2년 예산 기재)를 기재한다.

IRC §501(c)(3)의 면세단체 인증 심사는 법인목적이 IRC §501(c)(3)에 열거된 목적(종교, 자선, 과학, 공공 안전 시험, 문예, 교육, 국내, 국제적인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의 조성, 아동·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법인과 임원의 자기 거래 금지를 정관에 명기하고 있는지, 또한 위 8개 공익활동항목의 활동 목적의 어느 하나 이상의 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총 지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지, 공개 지원 테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등의 심사로 이루어진다.

IRC §501(c)(3)의 비영리 면세단체로 등록승인 받으면, 매년 국세청에 세금관련 일반정보뿐만 아니라 단체의 총매출액, 지출액 등을 포함한 정보를 세금신고서로 제출해야 한다.¹³⁰⁾ 이 신고서는 미국 가이드스타(Guide Star)¹³¹⁾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런 공개제도를 통하여 면세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많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의 사회환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¹³²⁾

130) 26 USC §6033

131) http://www.guidestar.or.kr/guidestar/guide_us.asp

13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백운찬,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02, 127-130쪽 참조.

6) 시사점

미국은 면세 자격이 있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및 종류를 ‘종교, 자선, 과학, 공공 안전 점검, 문학, 교육,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그리고 아동 및 동물학대방지’ 등¹³³⁾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관리와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경로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설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면세코드를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독일

1) 개 관

독일에서의 재산의 사회 환원인 나눔에 대한 여러 조세법상의 지원은 2007년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법률」(Das Gesetz zur weiteren Stärkung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 BüEnStG)¹³⁴⁾을 들 통해 개정되었다. 우선 본 개정법을 통한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재산의 사회 환원인 기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세제지원에 관한 관련 조세법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재산의 사회 환원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 현황

가.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법률

이법은 독일에서 공익적 활동(gemeinnützige Tätigkeit)과 관련한 기본적인 틀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10월 10일에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에 소급하여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기부자를 위한 세제감면에

133) 26 USC §170(c)

134) BGBl. I S. 2332.

관한 것이며,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소득세법(Einkommens steuer-gesetz)」, 「법인세법」(Körperschaftssteuergesetz) 등 일련의 세법 개정 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을 통한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상의 지도자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공 제금액(소득세법 제3조제26호)이 1,848 유로에서 2,100 유로로 증액되 었다. 둘째, 공법상의 재단이나 혹은 공익 재단이 조세기본법상(제52 조에서 제54조)의 세제 혜택을 받는 목적의 업무 수행이나 그의 위임 에 의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연간 총 500 유로까지 과세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소득세법 제3조제26a호). 셋째, 후원재단 회원의 회비는 조세법상 특별경비(Sonderausgabe)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0b조제1항).

동법은 관료적 장애의 제거를 통해 공익법과 기부금법이 보다 단순 화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됨과 함께 시민적 나눔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기부의 개념 및 의의

「시민적 나눔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법률」에 따른 “기부 (Spenden)”는 반대급부 없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한 자유로운 지출을 의미하는 출연(Zuwendung)과 연결된다. 이러한 출연은 「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 EStG)」 제10b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 외에 회 비(특정 법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출연은 기부와 회비에 대한 상위개념이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용어인 기부로 표현된다.

이러한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에서는 특별소비(지출) 로, 「법인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기부에 대한 현행법상의 세제감면은 공익적 목적이나 자선적 목적을 구별하고 있지

는 않다. 이는 「조세기본법」 제52조제2항에서 열거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부행위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자선적 행위를 포괄하는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 기부의 종류

독일에서 기부는 금전기부, 물품기부와 비용기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금전기부”는 현금, 수표 또는 송금으로 실행될 수 있으나 기부금 자체는 기부금수령자에 의해 직접 수령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부금이 수령하는 단체의 재산으로 직접 유입되고 등록되어야 한다. “물품기부”는 개인의 물품기부나 기업의 생산품 기부로 구분될 수 있고, “비용기부”는 배상의 포기로서 기부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약상 혹은 법적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기부금수령자의 범위

독일 「소득세시행령」(EStDV)에 따르면 출연금수령자를 ① 공법상의 법인이나 공공기관, ② 「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9호에서 열거된 단체로 보고 있으며, 사단이나 재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49조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교회도 공법상 법인이므로 행정기관을 통해 기부금수령자로서 특별한 인증 없이도 출연을 받을 수 있고 확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세제혜택을 위한 출연의 증명

가) 출연(기부)증서의 제시

출연증서는 기부금의 세금공제를 위한 실질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출연증서는 수령단체, 예컨대 교회가 출연액과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의 사용을 확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기부

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기부증서의 간소화

그리고 일명 ‘간이기부금증서’(Vereinfachter Spendennachweis)가 있는데, 이는 출연증서의 공적 표준을 대신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교부된다. 간이기부금증서의 상한은 기존의 1인당 100유로에서 200유로로 증액되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기부금이 2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은행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¹³⁵⁾

바. 기부금공제의 상한과 이월

가) 개 관

기부금공제에 대한 상한이 종전에는 목적에 따라 5%(교회, 종교적, 스포츠를 비롯한 특별히 지원가치가 있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와 10%(자선적, 학술적, 그리고 특히 그 후원할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적 목적의 경우)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제10b조제1항제1문 및 제2문에 따라 공제상한이 통일적으로 「조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제54조의 의미에서의 모든 후원할 가치가 인정되는 목적의 경우 전체 소득액의 20%에로 일원화되고 상향조정되었다(소득세법 제10b조제1항제1문제1호). 또한 기업이 기부하거나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 전체 매상액의 2/1000에서 4/1000까지 확대하였으며, 한 해에 지출된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비용으로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소득세법 제10b조제1항제1문제2호). 한편 공제 대상 기부금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하여 특별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소득세법제10b조제1항제9문).

135) Erzbischöfliches Ordinariat Berlin (Hrsg.), Neuregelung des Spendenrechts, 2008, S. 10.

나) 재단출연 기부금의 공제상한

독일에서 재단은 그 기능에 따라 후원재단(Förderungsstiftungen), 활동재단(Operative Stiftungen), 잠정적인 소비재단(Verbrauchsstiftung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재단들은 「조세기본법」 제 52조 부터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적, 자선적, 종교적 목적의 재단일 경우 대부분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에 출연한 기부의 경우 조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기부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9년의 과세기간에 총 100만 유로까지 「소득세법」 제10b조제1항제1문에 따른 소득 총액의 20%에 추가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b조제1a항). 따라서 재단자본금에의 기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0회까지 연속된 과세기간으로 분할하여 소득공제될 수 있으며, 추가로 매년 소득의 20%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기존의 재단자본금에의 기부는 재단의 신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장기간 존속해온 재단에의 출연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상속세법(Erbchaftsteuergesetz)은 제13조에서 면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 제16호 b에 따르면 종교적, 공익적 혹은 자선적 목적의 재단에의 기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제16호 b문). 또한 조세가 소멸하는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9조에 따르면 그 4호에서 사망이나 증여에 따른 자산이 조세 발생 이후 24개월 이내에 「조세기본법」 제52조 부터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 혜택을 받는 공익재단을 위해 사용된 경우 조세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독일에서의 재산의 사회 환원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는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이월공제, 상속세나 증여세의 면제를 허용하는 세법상의 지원을 통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조성해 왔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 소득공제의 상한을 넘는 기부금에 대한 이월 공제에 있어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점은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이월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 6 절 소 결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의 사회환원에 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각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종교단체, 법인·정당·사회단체 등이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 조세관계법에서는 세제혜택 대상 기부금 종류(법정·지정)를 열거하고 있다. 그 외 「신탁법」 및 각종 공익단체 및 법인관련 법령에서 기부금이나 재산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의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재산을 사용할 단체·법인의 설립 및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신탁법」 등에서 비영리단체·법인 설립 및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각종 세제혜택 및 의무부과 관련 규정으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i)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기부자(개인, 법인)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개인은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를 소득공제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개인은 30%(종교단체에의 기부는 10%), 법인은 1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ii) 기부받는 경우에 기부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소득공제이월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외국의 조세지원제도도 큰 틀에서 보면 소득공제제도와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부자(개인, 법인) 및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에 따라 소득공제(손금산입)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점, 그리고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공제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비슷하다 하겠다. 그리고 비과세단체의 요건 등을 규정하여 조세지원의 엄격성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대동소이하다 하겠다.

이처럼 현행 우리나라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 규정들이 다양한 사회환원의 방식별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또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관련된 법규정이 법률소관부처도 다르고 또한 법령상의 주무관청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각 부처 재량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단체를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요컨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규정의 경우를 보면,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각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법규정과 목적의 중첩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 개 관

재산의 사회환원은 보통 환원자가 직접 수혜자에게 환원행위를 하기보다는 기존 비영리 공익단체·법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비영리 또는 공익단체나 법인에 재산기부 등의 사회환원 행위를 하면 이들 단체나 법인이 기부된 재산을 갖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모두 재산기부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재산기부를 유인하거나 받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율이 있다. 이러한 규율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이다. “기부금품법”은 그 목적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한다.

이법은 기부금품모집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고, 기부금품 모집의 목적 등을 제한하고, 기부금품 모집목적외 용도 사용금지,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모집 및 사용 결과의 공개 공지, 장부 등의 검사, 회계감사 등을 규정하며,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여 사후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있어서 등록제 등 사전 규제는 기부금품 모집의 활성화를 통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 기부금품 모집 등에 대한 규제의 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부금품을 모집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 이자만으로 운용한다거나, 아니면 유용을 하거나 불투명한 운영을 하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행위를 주저하게 하게 재산의 사회환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동시에 시민들이 믿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틀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나아가,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나아가 실제로 행해지는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 외에 사회적인 예우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시민의 사회에의 기여 및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그로 인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제고하는 것은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므로 기부금품법도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¹³⁶⁾, 최근에는 정부의 기부금품법개정안이 입법예고(이하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이라 한다.)¹³⁷⁾되었다. 아래에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36) 2013년에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7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37) 정부는 개정법률안을 중전에도 입법예고했었고, 자장 최근의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31일(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66호)에 있었다.

2. 기부금품 모집 방법의 개선

(1) 개 관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제2조 제2호)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정의 규정 중 ‘그 밖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등록청의 재량에 따른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모집방법의 구체화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등이 행해지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소액 기부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방법을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개정안¹³⁸⁾은 현행법의 ‘그 밖의 방법’을 “서신, 광고, 공개된 장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에서의 모금,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안 제2조제2호). 이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하여 모집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등록청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기부금품 모집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13.7.1., 의안번호 1905772)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1) 개 관

i)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즉, 등록된 자만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인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가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은 구법인 「기부금품규제법」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ii) 또한 1천만원 미만 금액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등록없이도 할 수 있다. 기부금품모집자가 등록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다가 등록대상금액인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게 되거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하던 중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 1천만원초과 미등록 모금자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모집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모집자는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1천만원이 넘지 않게 모금액을 조절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리고 1천만원이상 모금등록자가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통해 곤란함을 해결할 수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모금한 1천만원미만 미등록모금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제 전환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기부금품법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사실상의 기부행위의 강요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비자발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비자발적인 기부금품 강요로 인하여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산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기부금품모집을 규제하기보다는 권장하여 많은 기부행위가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제의 연장선상에서 등록제를 취하고 있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등록 자체를 형식적 절차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등록제를 대신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부금품을 더욱 손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적 측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모집의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등록을 하는데 따르는 불편함 등을 우회하기 위하여 후원금, 찬조금 등의 명칭으로 변형적 모금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통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수반하는 문제점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등의 공개의무화, 감독 및 감사의 철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부금품 초과 모집의 사후등록제 검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천만원미만을 목표모금액으로 하는 미등록 모금자의 경우에 1천만원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후등록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사후등록을 인정하게 된다면 등록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또한 등록을 통하여 모금액수를 미리 사전에 공개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등록제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후등록제도를 도입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은 이러한 경우의 사후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기부금품 모집 사후등록제

현 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p><u><신 설></u></p>	<p><u>제4조의3(사후등록) ① 1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이 법의 모집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4조제1항 각 호의 모집·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첨부할 수 있을 것</u> <u>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u> <u>3. 등록신청자의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등록신청일 현재 1천만원 이내이거나 1천만원을 초과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을 것</u> <p><u>② 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u></p> <p><u>③ 등록청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등록청은 그 등록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의해 등록한 모집자의 등록 전 모금한 기부금품은 등록 후 모금한 기부금품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u></p>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사업범위의 개선

(1) 개 관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은 자선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대상사업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표 36> 2012년 모집유형별 등록내역¹³⁹⁾

구분	합계	자선사업	국제구호	북한지원	환경보호	사회적약자	의료지원	교육지원	재해구호	기타
건수	153	69	13	10	20	6	2	11	4	18
억원	907	535	83	31	61	84	2	43	7	61
비율		59%	9.2%	3.4%	4%	6.7%	0.2%	4.7%	0.8%	6.7

(2) 기부금품 모집의 원칙적 허용 제도로의 전환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139) 안전행정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2.7.31., 7쪽 표 재인용.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규제하고 그 밖에는 모두 허용하는 인허가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네거티브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모집등록 대상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새롭고 다양한 목적 사업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져서 기부를 통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모집을 금지하는 방식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이 같으나 구체적인 금지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쟁점¹⁴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이 ① 영리·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③ 공공질서·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같은 금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청은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허용 방식으로 등록체계를 변경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안 제4조제2항).

한편, 국회 제출 의원입법안은 영리목적, 종교활동 목적 및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지원할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¹⁴¹⁾

140)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2012년 9월 3일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예고안은 ①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에 최소한의 규제를 명목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지만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해석에 있어서 정부의 재량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등과 관련한 사업의 모금을 금지하고 있었던 바, 이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14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2013.7.1., 의안번호 1905772) 제4조제3항.

<표 37> 모집 금지대상사업의 범위 비교

현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진선미 위원 대표발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금지 ○ 예외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구제 - 재난구호 - 자선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진흥 등 8개분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허용 ○ 예외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또는 정치·종교 목적 사업 - 법령위반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공질서·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허용 ○ 예외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목적 사업 - 종교활동 목적 사업 - 특정정당 및 후보자 지지·지원 목적의 사업

등록 금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입법예고안 진선미 의원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입법예고안이 금지 대상사업의 범위가 더 크다.

5. 기부금품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의 개선

(1) 개 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기간과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다(제4조제1항제2호). 그러나 모집 및 사용계획서 내용변경으로 모집기간 등록변경을 한 경우 모집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석하여 온 것이 관행이었다. 반면에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¹⁴²⁾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사례¹⁴³⁾가 발생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당초 모집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하거나, 이자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우선 모집 및 사용계획서의 내용변경으로 인한 등록변경으로 모집기간이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 모집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맞게 모집기간의 변경기간을 최대 1년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도록 하여 당초 등록모집기간 포함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제4조제1항제2호,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제4조제1항제2호).

또한 모금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불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완료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기부금품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완료하도록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부금품의 사용기한과 연장기간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아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은 최초등록시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

142)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통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 제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연장 시에도 5년까지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143) 수익원을 모집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한을 계속 연장(최장 5년)하여 이자수익만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고 사용기간 변경 등록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4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¹⁴⁴⁾,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은 최초등록시 사용기한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장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아¹⁴⁵⁾ 사용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거나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38>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의 개선 비교

현 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p>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u>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1. (생 략)</p> <p>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u>모집기간</u>,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p>	<p>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 ----- ----- -----<u>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u> --- -----<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u>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u></p> <p>1. (현행과 같음)</p> <p>2. ----- ----- <u>1년 이내의 모집기간</u> -----</p>

144) 안 제4조의2제1항

145) 안 제4조제1항3호

현 행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p>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생략)</p> <p>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u>모집 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u></p> <p>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후단 신설></p>	<p>-----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모집 목표액, 모집방법, 모집기간 등을</u>----- ----- ----- -----<u>하되, 모집기간에 모집을 끝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u></p> <p>3. ----- ----- ----- -----<u>. 이 경우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한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u></p>

6.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제도 개선

1) 개 관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어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모집의 신고제로 인하여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로 인해 기부자가 기부에 대한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기부금품이 본래의 모금취지에서 벗어나 유용되거나 또는 기부금품 사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무분별한 모금행위의 강요 등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염려가 있고 또한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지 위하여 현행 기부금품법은 제8조에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¹⁴⁶⁾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현행법 기부금품법 제8조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정보의 공개 규정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범위와 내용이 재산의 사회환원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소액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부금품모집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의 정보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의 모집활동과 배분상태를 세분화하여 기부금품 정보 공개제도를 따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의 사후공개 등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적합한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중단·완료 및 사용·타목적 사용 공개의 개선

1) 개 관

현행 기부금품법 제14조제2항¹⁴⁷⁾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¹⁴⁸⁾에서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모집금품의 총액·수량,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가. 기부금품 관련 정보 통합 공시 사이트 구축

현행과 같은 정보공개방식은 기부자가 일일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

147)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148)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①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③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④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제3항).

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품모집자의 해당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나 기부에 관심있는 자가 공시내용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개사유의 확대 및 정기적 공개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의 중단, 기부금품의 사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에 있어서만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서(제14조제2항), 모집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미흡한 관계로 기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서 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재산의 사회환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공개사유(모집 중단, 기부금품 사용 등) 발생시 현행 14일 공개게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자는 진행중인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결과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4조제2항).

<표 39> 모집상황과 사용결과의 정기적 공개

현 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p>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생략)</p> <p>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u>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u>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모집상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생략)</p> <p>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p>	<p>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u></p>

현 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p><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u>를 공개하여야 한다.</p>	<p><u>공개하여야 한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때 또한 같다.</u></p>

7.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 도입 검토

재산의 사회환원의 기초가 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서는 기부금품을 어떻게 잘 모집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을 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에 있어서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실태를 볼 때, 기부금품 모집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지, 그리고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기부형식이 다양화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단체가 증가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경우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품 모집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회 의원입법안은 아래 <표 40>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중개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모집중개자라 함은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

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안 제4조의2 본문)로 규정하고 있다.

<표 40> 모집중개자 제도 도입

현 행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신 설>	<p>제4조의2(모집중개자의 의무) <u>모집중개자(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등 모집자에 관한 정보</u> 2. <u>모집자와의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수수료</u> 3. <u>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및 모집기간</u> 4. <u>모집금품의 총액·수량 및 사용명세</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8. 모범기부자 등에 대한 예우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기부자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문화활성화에 공로가 많은 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예우조치가 필요하다.

(1) 모범기부자등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조치 등

현재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¹⁴⁹⁾ 또한 모범기부자 등이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사회환원이 기부행위가 비대가성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기부행위에 동참시키는 것이 재산의 사회환원의 확산에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유·무형의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0> 모범기부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등

현 행	2013년 정부입법예고안
<신 설>	제3조의4(포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공로가 큰사람이나 모범적인 기부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범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범기부자를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교육 효과를 제공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9)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 2 절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 개 관

재산의 사회환원은 일반적으로 기존 비영리 공익단체나 법인에게 기부를 하거나 직접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고 출연재산을 기반으로 공익활동을 하거나 공익활동을 하는 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이 중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일반 기부희향자로서는 힘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있으며(공인법인법 제2조), 비영리법인¹⁵⁰⁾에 해당하는 법인은 출연재산이나 재

150)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은 26개가 있다. 즉.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원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공익법인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공인법인법 제4조제1항), 출연재산이나 재원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주무관청의 재량적 처분에 따라 성립이 결정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의사에 따라 설립허가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공익성”과 “출연재산이나 재원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이나 출연재원의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처럼 공익성과 출연재산이나 출연재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공익법인 설립의 핵심사항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현재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재량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독립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영국의 공익위원회나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에서와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입법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하여야 재량의 여지를 피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이 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체계의 전환과 함께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제 3 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 공익신탁제도의 개선방안

(1) 개 관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여, 「신탁법」은 이들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신탁의 목적이 사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탁관계를 “공익신탁”이라 한다.

재산의 사회환원은 보통 비영리 또는 공익단체·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공익법인인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익재단설립을 통한 재산의 사회환원은 비교적 큰 규모의 기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은 기존의 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특정공익목적에 위한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경우는 그 동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기부를 하려는 자들은 스스로가 한 기부에 대하여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비교적 강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부경로의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부경로의 한 형태가 공익신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신탁법」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탁법」은 신탁이라는 사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므로 등기나 등록이라는 절차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설정은 주무관청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신탁이라는 사법관계에 공법적 규율을 도입하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공익신탁의 설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익신탁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재량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며, 재산의 사회환원의 방식으로서 공익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나 공익신탁의 설정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개선방안

현행 공익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탁설정 허가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익신탁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에 따라 공익신탁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또한 재량의 여지가 다르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방식으로는 공익신탁을 「신탁법」에서 분리하여 「(가칭)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과 현행 「신탁법」을 개정하여 문제되는 공익신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겠다.

1) 「(가칭) 공익신탁법」 제정 방안

「신탁법」과 별도로 「(가칭) 공익신탁법」을 제정하는 경우의 공익신탁에 관한 입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귀속자 문제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현행처럼 주무관청별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탁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자는 견해¹⁵¹⁾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주무관청별로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각 부처별로 부령으로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갖고 마찬가지로 주무관청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을 규율하고 있고, 또한 ‘신탁’에 대해서도 주무관청별로 허가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신탁」만 법무부장관으로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는 것은, 어느 법이든 비영리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체계상 맞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공익신탁의 목적에 적합한 주무부서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이의제기도 가능할 것

151) 2012.7.24. 정부제출 「공익신탁법안」. 이하 “정부 「공익신탁법안」” 이라 한다. 이 정부 「공익신탁법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제정안 중 대부분이 공익신탁을 규율하는 내용으로서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국회법사위원회의 정부제출 「공익신탁법안」 검토보고(2013.2), 7쪽 주4 재인용).

이다. 또한 공익신탁의 주무관청을 일원화한다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도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나. 공익신탁설정의 허가제 완화 문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이 다양하여 자산가나 기부유향자가 쉽게 사회환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공익신탁설정의 허가주의를 완화하여 인가제로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공익신탁을 활용하여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입법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익신탁법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소정의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안 제3조), 법무부장관은 인가신청이 제4조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안 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제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하여 사회환원된 재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환원된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설정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수반하는 문제점을 예방·보완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익신탁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시해야 할 내용으로는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이 해당¹⁵²⁾되겠다.

라. 공익신탁에 대한 외부감사 등 도입 문제

공익신탁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¹⁵³⁾ 공익신탁된 재산에 대한 내부 통제 는 물론 외부 감사까지 하여 공익신탁이 공익신탁 본래의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 일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 익법인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 도록 하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신탁법」 개정 방안

신탁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안에 의해 재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 신탁의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탁법 제8장(공익신탁)을 전면적 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은 현행 「신탁법」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공익신탁을 규정하는 제8장을 중점적으로 바꾸는 방식이기에 신탁제도운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서는 재산의 사회

152) 정부 「공익신탁법안」 제10조 참조

153) 정부 「공익신탁법안」 제17조 및 제18조 참조

환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허가제의 완화를 위시하여, 규제완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외부감사 제도 도입, 공익신탁에 대한 행정감독의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처럼 앞에서 기술한 독립 공익신탁법 제정의 주요내용을 현행 신탁법 제8장(공익신탁)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면 현행 「신탁법」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도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기부연금의 도입

(1) 개 관

최근 우리 사회는 부유층의 증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의 인식 확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본인이 가진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로 실제로 재산을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재산을 기부하면서도 남은 생애동안 소득을 보장받거나 또한 재산기부자의 사후에 그 가족이나 특정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부모델을 검토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¹⁵⁴⁾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 “기부연금”이라 할 수 있다. 기부연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신탁 제도이다. 따라서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¹⁵⁵⁾하여 재산의 사

154) 생전에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연금으로 생활하다 사망한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에 넘기는 잔여기부연금 공익신탁제도도 있다.

155) 보건복지부는 기부연금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제화의 내용을 보면, 나눔단체는 물적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지정한 자에게 그 나눔물품 가액의 일부 금액을 연금(이하 “기부연금”이라 한다)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나눔단체는 기부연금의 지급, 재원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눔기본법 입법예고안」(보건

회환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기부연금을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1)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을 결합한 혼합신탁의 도입에 따른 법제 개선

사익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지만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이 결합한 기부연금제도의 경우 신탁법의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우리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구상해야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칭)공익신탁법」을 제정하는 경우 공익신탁 부분은 「(가칭)공익신탁법」을 적용하고 사익신탁 부분은 「신탁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를 기부연금의 도입방법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민법상 유류분제도와와의 상충문제의 해결 필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민법상 유류분제도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유언신탁이 아닌 경우로서 신탁자 사망전 일정기간 내에 기부연금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민법의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가, 일정 정도에서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입법적 해결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러한 입법 규정은 「(가칭)공익신탁법」 제정안이나 「신탁법」 개정안에 규정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복지부공고 제2012 - 668호, 2012년 12월 18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수익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무조건 추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의 개정 등에 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제 4 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의 개선방안

1.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1) 개 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3년,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¹⁵⁶⁾ 그러나 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 법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연장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의 경우와 같이 현행 3년¹⁵⁷⁾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156) 법률 제11146호, 2012.1.1., 일부개정(시행 2012.1.1.)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157)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기부금의 종류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¹⁵⁸⁾

2. 소득세의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1) 개 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3년 1월 1일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제132조의2). 이에 따르면 소득공제 상한 대상인 8개 항목은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이고, 법정기부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순서에 따른 공제방식에 의해 의료비와 카드값 등의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채우면 지정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제한없이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현행법에서 소득세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종합한도 합계액 계산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의 후순위로 인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감소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민간재산의 자발적인 사회환원에 대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지정기부금을 ‘소득세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공제 혜택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158)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061)을 2013년 9월 3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하는 신설 조항은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의 확산을 막는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지난 20년 동안 비영리·공익활동에 대한 민간재산의 사회환원은 많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한계로 정부의 역할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민간 재산의 사회환원으로 인한 민간공익활동으로 대체시켜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추세로서 자리할 전망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소득세의 소득공제종합한도제도가 신설되고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소득공제종합한도 합계액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고액기부자의 기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비영리 공익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개인 기부는 7조원 정도인데 이 중 4조원가량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9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법안 때문에 4조원 중 10%만 줄어도 4000억원의 기부가 사라진다. 따라서 세금 900억원을 더 걷기 위해 4000억원의 기부가 준다면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다”¹⁵⁹⁾라는 지적도 있듯이, 현대사회는 복지사회이고 복지사회는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할 수 과제이므로 민간부문의

159) 정무성,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주최: 원혜영 의원실, 주관: 한국NPO공동회의, 아름다운 재단, 한국비영리학회), 2012년 5월 7일, 토론요지 중에서(자료집에 토론문이 게재되지 않아 중앙일보 2013년 5월 8일 기사 재인용: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454236&cloc=olink|article|default).

재산의 사회환원을 통한 재원확보와 참여가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세의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항목을 제외시키는 관련법 개정¹⁶⁰⁾이 필요하다.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653)」이 나성린의원 대표발의로 2013년 9월 2일에 발의되었다. 이 발의법안은 특히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2조의2).

참고 문헌

< 문헌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법안」 검토보고, 2013.2
-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
- 박주언, 이희길, 나눔통계개선방안, 통계개발원, 2011,
- 백운찬,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2
- 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 제정으로 나눔문화 선진국,’ 보도자료,
2012.12.17.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2012」, 제12회 국제기부문
화심포지엄, 2012.10
- _____, 「기빙코리아 2013」, 제13회 기부문화심
포지엄, 2013
- 안전행정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
고 보도자료, 2012.7.31.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2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 진선미 의원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905772), 2013.7.1.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 2011.11.24.
- Paul R., McDaniel, Federal Incom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Third
Edition, 1994
- Erzbischöfliches Ordinariat Berlin (Hrsg.), Neuregelung des Spendenrechts,
2008.

<인터넷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3/index.board?bmode=read&bSeq=219&aSeq=2523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http://www.beautifulfund.org/?c=3/14/85&uid=25597>

<http://www.beautifulfund.org/?c=3/14/85&uid=26557>

<http://www.chest.or.kr/>

<https://www.cafonline.org/navigation/top/about-us.aspx> (2013.10.3. 방문)

<https://www.cafonline.org/PDF/WorldGivingIndex2012WEB.pdf>

<https://www.cafonline.org/research/publications/2010-publications/world-giving-index.aspx> (2013.10.3. 방문)

<https://www.cafonline.org/publications/2011-publications/world-giving-index-2011.aspx> (2013.10.3. 방문)

http://ecos.bok.or.kr/flex/Key100Stat_k.jsp 2013.10.3 방문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Giving USA 2012 Executive Summary, Giving USA Foundation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2013.10.3 방문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http://npoinfo.hometax.go.kr/distribution/wepa8802.jsp>

http://www.guidestar.or.kr/guidestar/guide_us.asp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454236&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0>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2502>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2522>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2055>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501>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26/6033>